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4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으로 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기획감사실장 장 석 원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기획법무담당 김 홍 기
	담당자 성명 · 전화	배 윤 중 860 - 2054, 2055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장에게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,000명 이상이어야 한다.	제2조(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----- ----- -----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“19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② 내지 ⑩ 생략